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 경, 김경훈,
김영철, 김형재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철성,
유만희, 이용균, 이원형,
한 신, 홍국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
-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 협조 규정의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태권도 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(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·팀
2.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·팀
3.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
4.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	△	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에 따른 세입감소 여자가 있으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동 개정안 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에 의한 세입감소의 여지1)가 있으나,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확인결과 지원대상, 지원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시설사용료 면제·감면 특성상 사용대상자 수 및 사용빈도2)에 따라 감소되는 세외수입이 달라져 본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를 준용한 자체적 추계 또한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 희 선
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 ☎ 02-2180-7954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시설사용 지원은 해석상 행정적 지원, 면제·감면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서울시립체육시설 무료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전제하는 경우 세입감소 발생의 여지가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 2) 태권도 종목 특성상 자체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빈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 ⇒ 따라서 현 시점에서 **평균적인 사용빈도**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